

대구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가단1779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 종결 2019. 4. 12

판결 선고 2019.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대구지방법원 2018카정109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9. 5. 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2. 11.12. 접수 C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영천시 D 대 836토지 및 그 지 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을 E, F, G으로부터 증여받아 같은달 22.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1. 9.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2. 11. 12.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1/2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차용증상 차용금액은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차용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2013. 6.경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4년 이후 연 12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으로 그동안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다른 내용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2019. 4. 12.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이 2018카정109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9. 5. 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정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황형 주

별지